

1. 개정이유

경찰청·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10조)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의 명칭을 대테러위기관리과로 변경함.

나. 서울청 테러대응과 명칭 변경(안 제38조)

서울청 경비부 테러대응과의 명칭을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함.

다.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명칭 변경(안 제40조의2)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대로 변경함.

라.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 명칭, 사무 변경(안 제41조)

서울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지원과의 명칭을 경제안보수사과로 변경하고, 테러·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를 안보수사과에서 경제안보수사과로 이관함.

마.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인력변동(안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청 7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의 감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대학의 정원 1명(7급)과 경찰청 본부 정원 1명(9급)을 상호 이관함.

바.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 등(안 제77조, 제78조, 별표6, 별표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시설 감사 등 치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청에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5명(8급 1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254명(8급 25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0. ~ 7.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비과·위기관리센터·경호과”를 “경비과·대테러위기관리과·경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위기관리센터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관리센터장”을 “대테러위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테러대응과”를 “위기관리경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테러대응과장”을 “위기관리경호과장”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반부패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를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범죄수사대장”을 “반부패수사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안보수사지원과”를 “경제안보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보수사지원과장”을 “경제안보수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첩·테러·경제안보”를 “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로, “수사의 지도·조정 및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외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를 “대테러 및 방첩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첩·테러·경제안보”를 “간첩”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 중 “108명”을 “109명”으로, “시설주사 1명”을 “시설주사 2명”으로, “시설주사보 6명”을 “시설주사보 5명”으로, “학예연구사 1명”을 “학예연구사 2명”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811명(행정주사 30명)”을 “79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1명)”으로, “308명”을 “293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891”을 “1,8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5”를 “664”로 하며, 서기관 또는 총경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27 다음에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4”를 “42”로 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 “3”을 “4”로 하며, 행정주사보 146 다음에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67”을 “65”로 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삭제하며, 학예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17”을 “134,318”로 하고, 일반직 계 “4,363”을 “4,364”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0”을 “59”로 하며, 행

정서기보 “581”을 “58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6”을 “77”로 한다.

별표 7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72”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계 72 다음에 “소방경 72”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128”을 “135,117”로 하고, 일반직 계 “5,174”를 “5,16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7”을 “9”로 하며, 행정주사 “114”를 “115”로 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 “1,458”을 “1,44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620”을 “622”로 하며,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6”을 “77”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72”를 신설하며, 소방공무원 계 72 다음에 “소방경 72”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4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종전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5명(행정서기 15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254명(행정서기 254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4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시설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8의 정원 6명(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보 5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u>경비</u> <u>과 · 위기관리센터 · 경호과</u> 및 항공과를 둔다.	제10조(경비국) ① ----- <u>경비</u> <u>과 · 대테러위기관리과 · 경호</u> -- -----.
② 각 <u>과장</u> 및 <u>위기관리센터장</u> 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 <u>과장</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기관리센터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대테러위기관리과장</u>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 과 및 <u>테러대응과</u> 를 둔다.	제38조(경비부) ① ----- --- <u>위기관리경호과</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테러대응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위기관리경호과장</u>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 사단에 <u>반부패범죄수사대 · 공</u> <u>공범죄수사대 · 금융범죄수사대</u> <u>· 마약범죄수사대</u> 및 형사기동 대를 둔다.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 ---- <u>반부패수사대 · 공공범죄</u> <u>수사대 · 금융범죄수사대 · 마약</u> <u>범죄수사대</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반부패범죄수사대장</u> 은 공무 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	③ <u>반부패수사대장</u> -----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수사지원과 및 안보수사과를 둔다.

② (생략)

③ 안보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간첩·테러·경제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및 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3. ~ 6. (생략)

7. 외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 (생략)

④ 안보수사과장은 간첩·테러·경제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안보수사부) ① -----
---- 경제안보수사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안보수사과장-----
-----.

1. (현행과 같음)

2. 테러·경제안보·침단안보-----
----- 수사

3. ~ 6. (현행과 같음)

7. 대테러 및 방첩업무-----

8. (현행과 같음)

④ ----- 간첩 -----

-----.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11명(행정주사 30명, 행정주사보 99명, 공업주사보 39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308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39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99명(행정사무관 2
명, 행정주사 31명)-----

----- 293명-----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891</u>	<u>1,890</u>	-1
	.		.	.	
	.		.	.	
일반직 계			<u>665</u>	<u>664</u>	-1
	.		.	.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u>			<u><신 설></u>	<u>1</u>	+1
<u>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u>					
<u>행정사무관</u>					
	.		.	.	
	.		.	.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u>			<u><신 설></u>	<u>1</u>	+1
<u>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		.	.	
	.		.	.	
행정서기보			<u>44</u>	<u>42</u>	-2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시설주사	<u>3</u>	<u>4</u>	+1
·	·	·	
·	·	·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시설주사보	<u>7</u>	<u>6</u>	-1
·	·	·	
·	·	·	
행정서기보	<u>67</u>	<u>65</u>	-2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학예연구사	<u>2</u>	<u>3</u>	+1
·	·	·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4,317</u>	• <u>134,390</u>	+73
일반직 계	• • <u>4,363</u>	• • <u>4,364</u>	+1
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또는 총경	• • <u>1</u>	• • <u><삭 제></u>	-1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 <u>60</u>	• • <u>59</u>	-1
행정서기보	• • <u>581</u>	• • <u>583</u>	+2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76</u>	<u>77</u>	+1

•	•	•	
•	•	•	
<u>소방공무원 계</u>	<u><신 설></u>	<u>72</u>	+72
<u>소방경</u>	<u><신 설></u>	<u>72</u>	+72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5,128</u>	• <u>135,189</u>	+61
일반직 계	• • <u>5,174</u>	• • <u>5,163</u>	-11
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 <u>또는 총경</u>	• • <u>1</u>	• • <u><삭 제></u>	-1
행정사무관	• • <u>7</u>	• • <u>9</u>	+2
행정주사	• • <u>114</u>	• • <u>115</u>	+1
• •	• •	• •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60</u>	<u>59</u>	-1
·	·	·	
·	·	·	
행정서기	<u>1,458</u>	<u>1,443</u>	-15
·	·	·	
·	·	·	
행정서기보	<u>620</u>	<u>622</u>	+2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76</u>	<u>77</u>	+1
·	·	·	
·	·	·	
<u>소방공무원 계</u>	<u><신 설></u>	<u>72</u>	+72
<u>소방경</u>	<u><신 설></u>	<u>72</u>	+72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